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교육과정운영협의회 운영 지침

제정 통계교육원 예규 제14호 2007. 7.28.

개정 통계교육원 예규 제22호 2010. 5.27.

일괄개정 통계교육원 예규 제39호 2014. 3.21.

일괄개정 통계교육원 예규 제51호 2015. 3.27.

일괄개정 통계교육원 예규 제66호 2016. 2.15.

일부개정 통계인재개발원 예규 제3호 2025. 2.25.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예규 제3호 2026. 3.30.

제1조(총칙)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기초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과정을 개선·개발하고 더 수준 높은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내에 교육과정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25.2.25., 2026.3.30.>

제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장은 교육운영과장으로 하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내의 담당자를 구성원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25.2.25., 2026.3.30.>

② 간사는 교육운영과의 협의회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개최) ① 회의는 매분기별 개최하되, 협의회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개최는 협의회의 장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의제)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의제는 다음 각 사항으로 한다. ①

전분기 실시한 과정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와 사후 개선방안

② 사용 교재의 적합성

③ 다음 교육과정의 설계(시간 및 과목)

④ 그 밖의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5조(자료제출) ① 각 과정담당관은 전월에 실시한 과정운영 평가결과를 매월 3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각 팀의 과정운영 평가결과와 출강강사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③ 과정운영결과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 과정담당관이 보고한다.

제6조(안전협의) ① 협의회는 보고서 및 각 과정담당관의 보고내용을 참조하여 운영 결과 노출된 문제점과 교육생의 건의 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② 그 밖의 교육운영관련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제7조(교재심의) <삭제 2015.3.0.>

제8조(회의결과 보고) 간사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취합하여 회의개최 후 즉시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2.25., 2026.3.30.>

제9조(자문위원회 보고) 협의회는 회의결과는 필요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에 보고하여 개선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25.2.25., 2026.3.30.>

제10조(사후조치) 각 과정담당관은 협의회 결과를 다음 교육 과정의 계획수

립 및 운영에 반영하고, 교육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18조 삭제 <2016.2.15.>

부 칙

이 지침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신설 2010.5.2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3.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3.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2.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2.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3.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